#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

#### 1. 제출자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### 2. 근거 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(04.04.28).

#### 3. 제안 이유

 지방분권, 지역혁신,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업무체계구축, 교육지원 등 신규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.

# 4. 주요 골자

- 혁신분권(지방분권, 국가균형발전, 변화와 혁신)사무 신설 (안 제5조)
- 교육지원 사무와 공무원후생에 관한 사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무 신설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)

## 5.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, 지방분권, 균형발전, 변화와 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로 분장하고. ○ 신규행정업무 신설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, 자치행정국에 공무원후생업무, 건설도시국에 지리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